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 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, 기존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례의 기한이 짧아 모든 대상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,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의 점검·검사·진단 자료를 활용하는 근거가 없어 비효율적인 행정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. 또한, 철도시설을 교체 중인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, 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.

이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정밀진단·성능평가 특례 실시기한 연장(부칙 제29617호)

정밀진단·성능평가 추진상황과 제도 시행주기(연도별 실시대상 분산 필요) 등을 감안하여 특례 실시기한을 2025.12.23.(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내)까지 연장하고자 함.

나.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 점검·검사·진단 자료 활용 근거 마련(안 제 28조제3항)

정밀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평가와 동일하게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·검사·진단 자료(3년 이내)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.

다. 정밀진단 실시방법,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신설(안 제28조 제4항)

정밀진단에 대한 실시방법,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.

라. 교체중인 철도시설의 정밀진단·성능평가 생략(안 별표2, 안 별표4)

철도시설을 교체 공사 중(설계 중인 경우 포함)인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·성능평가를 생략하고자 함.

마. 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 명확화(안 별표4)

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‘준공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’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바.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(안 별표5의2)

기계설비에 대한 정밀진단·성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물

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인정하는 기술인의 전문분야에 기계설  
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(2023. 9. ~ 2023. 11.)

##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·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·검사·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정밀진단의 실시방법, 절차 등 정밀진단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2의 비고 제5호 중 “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교체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.”를 “교체하였거나 교체를 위해 설계 또는 공사를 진행 중(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한다)인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생략할 수 있으며, 교체이후 최초의 정밀진단은 교체가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한다.(시설의 일부만 교체한 경우

에는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.)”로 한다.  
별표4 제1호 가목 중 “실시한다.”를 “실시하며”로 하고, 다음과 같이 단  
서를 신설한다.

다만,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 
날(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)을 기준으  
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.

같은 호 다목 중 “교체한 경우 교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”를 “교  
체하였거나 교체를 위해 설계 또는 공사를 진행 중(국토교통부장관이  
승인한 경우에 한정한다)인 경우에는 교체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계  
산한다(시설의 일부만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
한다.)”로 한다.

별표5의2 제1호의 비고 가목 2)의 “별표 1”을 “별표 1 제3호가목1), 4)의  
직무분야 또는”으로 하고, “제3호라목1), 3), 5)”를 “제3호라목1), 2),  
3), 5)”으로 하며, “6)의 직무분야”를 “6)의 직무분야 또는 같은 표 제3  
호아목2)의 직무분야”로 한다.

대통령령 제29617호 부칙 제2조 제1호 중 “3년 이내”를 “5년 이내”로 하  
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4년 이내”를 “5년 이내”로 하며, 제3조 중 “제31  
조에 따른 최초의 성능평가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”를 “법 제24조제  
4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법 제16  
조에 따른 준공확인(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  
한다)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성능평가는 별표 4 제1호 가목

에도 불구하고”로 하고, “3년 이내에”를 “5년 이내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8조(정밀진단의 실시) ① ~ 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8조(정밀진단의 실시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·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·검사·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.</u> 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정밀진단의 실시방법, 절차 등 정밀진단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</p>
<p>[별표 2]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비고</p> <p>5. <u>철도시설을 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교체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	<p>[별표 2]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비고</p> <p>5. ----- <u>교체하였거나 교체를 위해 설계 또는 공사를 진행 중(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한다)인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생략할 수 있으며, 교체이후 최초의 정밀진단은 교체가 완료된 날부터 10년이</u></p>





라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마. (생략)

[별표 5의2]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

1. 구조물, 궤도, 건축물 분야

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)

라. -----  
----- 제40조에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마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5의2]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

1. 구조물, 궤도, 건축물 분야

비고

1.“기술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가.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직무분야인 건설기술인

1) 구조물 분야 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다목1), 2), 4), 5), 9) 또는 10)의 직무분야

2) 건축물 분야 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다목1), 5) 또는 10)의 직무분야 또는 같은 표 제3호라목1), 3), 5) 또는 6)의 직무분야

비고

1.“기술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가.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직무분야인 건설기술인

1) 구조물 분야 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다목1), 2), 4), 5), 9) 또는 10)의 직무분야

2) 건축물 분야 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1), 4)의 직무분야 또는 제3호다목1), 5) 또는 10)의 직무분야 또는 같은 표 제3호라목1), 2), 3), 5) 또는 6)의 직무분야 또는 같은 표 제3호아목2)의 직무분야

부 칙

<제29617호, 2019.03.12>

제2조(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(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 비고 제2호에도

제2조(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)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: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

2.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: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4년 이내

3.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: 제2호에 따른 날과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날 중 늦은 날까지

제3조(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) 제31조에 따른 최초의 성능평가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한다.
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: -----  
----- 5년 이내

2. -----  
-----  
-----: -----  
----- 5년 이내

3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)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(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)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성능평가는 별표 4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-----

----- 5년 이  
내에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624